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 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제59조제3항제14호에 따른 업무의 영위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제43조제8항제2호 및 제9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특별계정을 통한 대출업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6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호협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8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에 관한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 시행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제2항 중 “(지점·사무소의 경우에는 1개월)”을 삭제한다.

제98조제3항 중 “(지점·사무소의 경우에는 1개월)”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손해사정업자가 따라야 하는 영업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가신청) ① ~ ③ (생략)	제9조(허가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체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 ----- ----- ----- ----- ----- ----- ----- ----- ----- 다만,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법

②·③ (생략)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략)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 ⑦ (생략)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제59조제3항제14호에 따른 업무의 영위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1. (현행과 같음)

<삭제>

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한 대출업무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②
(생략)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신설>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호협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에 관한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 시행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하

③·④ (생략)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u>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에는 1개월)</u>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u>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u>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u><신설></u>	<u>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u>2개월</u>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u>2개월</u>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제1항부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손해사정업자가 따라야 하는 영업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	--